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 정 2018. 09. 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연구본부장, 여성정책연구소장, 각 부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본부장이 대리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관리직·정보직 1명, 전문연구원·전문행정원 1명 등을 위원 정원 내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기획부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원규관리규정에 따른 원규의 제정, 개정,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수행규칙에 따른 연구업무의 관리·조정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간행물발간편집위원회규칙에 따른 심의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집과 의결)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②항에서 규정하는 규정과 규칙이 없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부의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